대한비과학회 연구회 규정

2005. 4. 8. 제정
2014. 3. 9. 개정
2019. 3. 10. 개정

제1조(명칭) 대한비과학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연구회를 둔다.<개정 2019.7.14>

1. 알레르기 및 면역학
2. 부비동염 및 비용
3. 기도점막기초
4. 후각 및 미각
5. 수면
6. 안면성형
7. 종양 및 두개저수술
8. 의료기기 및 재생공학

제2조(목적) 각 연구회는 대한비과학회 각 분야의 기초 및 임상술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.

제3조(회원) ① 모든 대한비과학회 정회원은 각 연구회에 복수로 가입할 수 있다.

② 가입한 회원은 연구회 모임에 년 2회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회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연구회 모임에 참석률이 적은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

제4조(연구회장) ① 각 연구회장은 각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연구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연구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
③ 연구회장은 각 연구회 회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모임을 주관하고 운영한다.

④ 각 연구회장은 년 1회 모임의 결과를 연구이사에게 제출한다

제5조(모임) ① 각 연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관심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회 통합모임은 각 연구회의 상호발전 및 교류를 위해 2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각 연구회는 연구회 모임 결과를 학회에 발표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이사의 임무) ① 연구이사는 연구회 전체를 총괄하고, 각 분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율한다.

② 연구이사는 연구회 모임의 활발한 개최 및 발전을 위해 수시로 연구회장과 협의하여 연구회를 지원한다. 단, 모임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연구회의

해체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③ 연구이사는 비과학에서 새로운 분야의 연구회의 발족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